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64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8. 13.

다. 회 부 일 : 2025.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은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과 중앙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신설>	<삭제> 제11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행	개정안
	<u>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u>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음.

개정안은 조합등 및 중앙회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를 새롭게 5년간 유효하도록 다시 규정함으로써 국산목재이용활성화 및 목재제품 등 임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조합등 및 중앙회는 2019년 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당초 5년에서 한차례 1년을 연장¹⁾하여 총 6년) 직접 생산하는 목재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목재제품 등의 임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임.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사업본부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 중 목재 조달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 간주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은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였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 후 연장하지 않았음.

1)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308호) 심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됨.

* 중소벤처기업부 반대의견: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이 어긋남

【 농해수위 소관 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현황 】

구 분	특례기간	연장기간	비고
농업협동조합	2017.12.30~2022.12.29 (5년)	2022.12.30~2027.12.29 (5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	2019.8.20~2024.8.19 (5년)	연장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2019.1.8.~2024.1.7 (5년)	2024.1.8.~2024.12.31 (1년 연장)	「산림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림조합의 목재이용 관련 중소기업 특례 간주 규정은 한시적 제도로, 이미 한차례 연장 시 관련 기관 협의(중소벤처기업부 반대의견, 향후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산림조합의 서약서 제출²⁾)를 통해 예외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부처 간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산림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규정은 조합의 경쟁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5년 조건부로 한시 허용한 것으로, 임업인·산주 등 산림조합원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1년(2024.12.31.까지) 연장하였는 바,

2) 참고자료(참고 1) 참조

수의계약 근거 없는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따라서 조합등 및 중앙회에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연장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수익성 개선과 공공성 유지의 긍정적 측면과 산림청·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입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서 약 서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11조의2와 관련된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며,
2. 향후 삼기 일몰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참고 2

산림조합중앙회 생산 목재제품

[자료: 산림청]

제품명		규격	비 고
각·판재	판재	15×95×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20×200×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38×184×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38×235×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각재	38×38×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38×89×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89×89×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89×140×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140×140×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180×180×3,600mm	건축재, 인테리어재, DIY
내장재	목재벽판재	12×105×3,600mm	내장마감재(낙엽송, 편백)
	플로어링	15×105×3,600mm	내장마감재(낙엽송)
	몰딩	20×75×3,600mm	내장마감재(낙엽송)
	걸레받이	12×90×3,600mm	내장마감재(낙엽송)
외장재	판재사이딩	27×130×3,600mm	외장마감재(낙엽송)
	채널사이딩	18×124×3,600mm	외장마감재(낙엽송)
	로그사이딩	38×128×3,600mm	외장마감재(낙엽송)
원주목	-	Ø6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8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10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12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15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18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20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250×3,600mm	기둥 및 서까래
	-	Ø300×3,600mm	기둥 및 서까래
목재텍	-	21×120×3,600mm	데크재, 건축재, 인테리어재
	-	27×140×3,600mm	데크재, 건축재, 인테리어재
	-	38×140×3,600mm	데크재, 건축재, 인테리어재
	-	27×89×3,600mm	데크재, 건축재, 인테리어재
집성재	구조용직교 집성판	비규격 제품	건축용, DIY
	집성판재	비규격 제품	DIY

※ 기타 비규격제품 주문생산 병행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제7호) : 방부목, 목재판재, 각재, 목재텍 만 해당